

제2회 해경발명대전 공고(수정)

지식재산(IP: Intellectual Property) 기반 해양안전 우수기술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발명 아이디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7. 3. 20.

특 허 청 장

☐ 공모주제

- 제품화, 산업화가 가능한 해양안전 분야 아이디어

* 1인당 3건 이내 제안, 최종 시상은 최상위로 평가된 1건에 대해서만 수여

☐ 추진기관

- 주최 : 특허청, 국민안전처
- 주관 : 한국발명진흥회, 해양경비안전교육원(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)

☐ 참가대상

- 공무원부문 : 국민안전처 공무원(국가공무원 한정)
 - 일반부문 : 해양안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
- ※ 국민안전처 공무원의 일반부문 참여 제한

☐ 신청서 제출

- 제출기간
 - 공무원부문 : 2017년 3월 20일(월) ~ 5월 19일(금) 18:00 마감
 - 일반부문 : 2017년 5월 22일(월) ~ 7월 21일(금) 18:00 마감
- 제출방법 : 온라인 접수(<http://coast.ripc.org/>)
 - 아이디어 제안서(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) 작성하여 업로드

□ 대회절차 및 일정

○ 공무원부분

아이디어 공모	→	아이디어 심사	→	아이디어 가치제고	→	최종심사	→	시상 및 전시
사전 상담 온라인 교육		기초서면심사 선행기술조사 대면심사		지식재산 교육 고도화·권리화 모형품 제작지원		최종상격심사		우수작 시상 수상작 전시
3~5월		5~7월		8~9월		10월		11~12월

○ 일반부분

아이디어 공모	→	아이디어 심사	→	아이디어 가치제고	→	사업화 지원	→	시상 및 전시
사전 상담 온라인 교육		기초서면심사 선행기술조사 대면(최종)심사		교육·컨설팅 고도화·권리화 모형품 제작지원		창업 연계지원 기술이전 지원		우수작 시상 수상작 전시
5~7월		7~9월		9~10월		9월~		11~12월

※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□ 시상계획(안)

구분	상 격	시상 주체	공무원부분	일반부분	상금	합계
개인상	대상	국민안전처 장관	1	1	2,000,000원	4,000,000원
	금상	특허청장	1	1	1,500,000원	3,000,000원
	은상	한국발명진흥회장	2	2	1,000,000원	8,000,000원
		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	2	2		
	동상	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	4	4	500,000원	4,000,000원
단체상		특허청장	1	-	1,000,000원	1,000,000원
합 계			11	10	-	20,000,000원

※ 심사결과 및 주최기관 사정에 따라 시상 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□ 문의처

○ 대회 문의

- 해양경비안전교육원(연구센터) 041-640-2451, kkw3835@korea.kr
- 한국발명진흥회 02-3459-2821, kahee@kipa.org

○ 아이디어 상담

-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-1900(전국 대표전화), <http://www.ripc.org/>

□ 기타 사항

- 공동 발명은 불가하며, 수상작에 대한 출원 지원시 출원인은 아이디어 제안자만 해당됨
- 제안된 아이디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인 발명 또는 고안에 해당되어야 함
- 본인의 발명(또는 고안)이 아니거나 공지 또는 실시된 발명(또는 고안)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상 불가 및 취소
- 국내외 유사대회에서 수상한 동일·유사 작품은 출품 불가
- 대회 출품 전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은 본인의 발명 또는 고안이라 하더라도 수상 불가
-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아이디어는 제안할 수 없음
-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불임 : “제2회 해경발명대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”에 따름
- 이 요강은 주최·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1. 본 대회 '공무원 부문'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『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』을 따른다.
2. 본 대회 '일반 부문'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는 『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』(특허청, 2013.12.제정)을 준수한다.
 - 가.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다.
 - 나. 주최측은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, 비밀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 다만,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.
 - 다. 주최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최측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다.
 - ①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
 - ②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
 - ③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
 - 라.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를 응모한 날부터 서면평가 발표일 전까지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주최측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주최측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응모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폐기한다.
 - 마. 주최측은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최종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한다. 다만, 수상작의 경우 제안자 동의를 얻어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바. 아이디어 제안자가 관련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갖고 주최측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, 주최측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해 「지식재산권 양도 등에 대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(이하 "우선협상권")」를 가질 수 있다.

- 사. 주최측은 우선협상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주최측에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양도 등을 승낙한다. 다만, 주최측이 제시한 대가가 불합리하거나 이보다 유리한 조건을 타인이 선의로 제시하거나 또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수상 아이디어를 직접 실시하고자 할 경우, 아이디어 제안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아. 주최측의 우선협상권 행사에 관한 합리적인 대가는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협의에 의해 정한다. 다만,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,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기관이 평가한 가치로 정한다.
- 자.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,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.
- 차.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, 주최측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기관, 중재기관,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.
- 카. 주최측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그 손해를 배상한다.